

[별지 제28호서식] <개정 2018. 4. 25.>

제 호				
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사실확인서				
신 청 인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(전화 :)		
	면허 번호			
연기일자			해소일자	
연기사유	질 병·부 상	구 속		기타 부득이한 사유
위 사람은 「도로교통법」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연기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 연기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년 월 일 ○○경찰서장 인				
(주) 1.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기간 경과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				